

1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6월 4일
- 제출자 : 박우근 의원,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전경원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 상정일자 :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 6월 22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박우근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 기금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명확화 (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안 제2조)
-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의 구성과 용도를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8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3. 검토보고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 제명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계정 구분에 관하여 규정함

-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구성과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6조에서,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

○ 검토 결과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난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단일화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각종 회계 운용상 여유 자원,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 특히,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인해 정부 세수 규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조례 등에 따라 당해 지출 계획과 운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코로나19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³¹⁾에 있어 그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하여 개정³²⁾하는 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 취지를 살려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균형을 이루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 아울러,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 내실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현행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조례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구분】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조성	1.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타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용도	1.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 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 제한	해당없음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초과 사용 금지 (단,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는 제한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